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18가단5219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박동영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변 론 종 결 2021. 10. 26.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접수 제1554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2019. 1. 13. 사망)과 혼인하였고, F는 자녀이다. 피고 D는 E(2020. 11. 27. 사망)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E는 2010. 3. 31. 주식회사 G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와 A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경기 여주군 H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F는 2011. 1. 28. I조합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E의 G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라. F는 2018. 9. 18. A에게 ‘E의 G은행 대출을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E에 대한 구상금채권 1,414,011,123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또는 양수’라 한다), 같은 날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A의 단독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E는 2015.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거래가액 450,000,000원)을 체결하여 2015.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인 E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금채권 등을 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보전채권이 흠결되었고, E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8가합573341로 E의 소송수계인 J, K, L, 피고 D, M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604)은 “G은행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N이고, F는 G은행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N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N의 부탁을 받고 N의 G은행 대출금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의사 하에 2011. 1. 28. G은행 대출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F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2021. 6.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다24936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별지 1]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연립주택

연와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295.24㎡, 2층 295.24㎡, 3층 295.24㎡,

지하실 295.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강남구 O 대 877.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Q호 연와조 60.79㎡, 지하20.26㎡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877.7분의 58.5. 끝.

